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11. 28.(수) 09:3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6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6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6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안건 중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견 진술 관련 안건인 <의결안건 가>를 심의한 후 <보고안건 가> 및 <의결안건 나>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67-557~566)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은 피심인 중 1개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 유입니다. 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등을 위반한 10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번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배경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보관, 무단 조회 등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13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13개 사업자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보관을 한 11개사, 오른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2개사 대박통신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조회, 그리고 케이티(진주지사)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 소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는

방통위와 KISA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는 10월까지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중 검단정보통신 등 10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롯데하이마트 등 3개사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메인통신의 경우 우측에 보시면 매출액이 미제출되었는데 대표가 현재 잠적 중이어서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고, <9>번의 한성텔레콤의 경우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업자가 브로씨앤씨, 큰나래, 한성텔레콤 등 3개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이 글로벌네트웍스 1개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 위반 한성텔레콤 등 4개사,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의 경우 검단정보통신 등 9개사가 되겠습니다. <5> 피심인 제출의견입니다. 한성텔레콤의 경우 금번 위반사항으로 제시된 이동전화 판매일보 등은 방통위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당사의 직원이었던 민원인이 수집·보관한 자료다, 그래서 처분 원인에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판매일보는 이동전화 영업점에서 이통사와 정산 등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을 일별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통상 엑셀파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 즉 판매일보가 조사결과 피심인의 가입자 자료와 일치하고 이 같은 수집·보관은 민원인이 피심인의 직원으로 재직 시업무상 행한 행위로서 피심인의 행위에 귀속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검단정보통신 등 7개사는 위반사항을 개선 완료했으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모두 파기시켰습니다. 메인통신, 큰나래 등 2개사는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조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민원인 의견진술을 먼저 듣고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 일반현황을 보면 메인통신 같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직원이 약 30명이고, 오늘 의견진술하러 나오는 한성텔레콤 같은 경우 직원이 25명에 매출이 170억원이라는 것 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경우 소위 큰손은 아니지만 이것이 단일 판매점입니까, 아니면 밑에 다른 판매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대리점이고 여러 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한성텔레콤은 8개 정도 되고, 메인통신 같은 경우 사장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8개 매장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판매점들이 몇 개 정도 발견된 것입니까? 한 곳에서 다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각각 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 부분은….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께서 한성텔레콤의 경우 몇 개 매장에서 발견됐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한성텔레콤의 경우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건은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나간 것인데 민원 신고인이 제보한 건으로 해서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식으로 판매점들, 대리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하는데, 예를 들어 8군데 판매점들 가운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8군데에서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보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메인통신은 매출액 자료가 왜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대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잠적 중에 있어서 직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대표를 찾고 있는 중이고, 매출에는 통상 사전통지를 할 때 받고는 있지만 과징금 처분할 때 매출액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표가 잠적한 이유를 직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임금체불로 인해 대표와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의견 듣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입장시켜 주십시오.

(의견진술인 입장)

지금부터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전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이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관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확인하였기에, 지난 7월 17일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에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의 이사이신 박철호 님 맞습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의 팀장이신 권윤경 님 맞습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먼저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박철호 이사님께서 이번 과태료(안)와 관련해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철호 이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안녕하십니까? 군산 한성텔레콤에서 온 박철호 이사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침부터 군산에서 달려온 이유는 저희 예전 직원이었던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저희의 억울함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선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성텔레콤은 2010년 4월에 군산에서 시작해서 현재 9년 정도 운영되고 있고, 가입자가 48,000명 있는 조그마한 대리점입니다. 아까 밖에서 들었을 때 매출액이 170 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단말기 할부매출이 포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0억도 안 되는 중소 대리점입니다. 지금 9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거쳐 갔지만 그동안 직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개인 직원의 일탈로 인해 회사 손실액이 3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죄를 부정하면서 저희가 사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담당 형사들도 진행 과정이 6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잘못 하였지만 이것을 어디에 유출하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많이 어려운 지역경제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2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잘 추스르고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곡히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본 과태료 처분 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한성텔레콤의 개인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바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 나갔을 때 발견된 자료가 아니라 제보에 의한 자료이니 그것은 증거자료로 불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은 현장조사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증거자료로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일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허 옥 부위원장

- 판매일보는 매장과 회사 간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판매일보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지,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산기간이 6개월 이후에는 다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판매일보를 운영했었고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 현장조사 때 만약에 자료를 빼돌렸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고 해서 현장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판매일보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지난 번 조사는 행정조사였지만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수사 의뢰해서 관련된 제보자, 담당 책임자를 대질신문하고 과거 자료를 모두 압수수색해서 만약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판매일보에 대해 정산이 끝나면 삭제하기를 요청 하였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판매일보에는 분명히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PC도 초기화할 것을 회사에서는 권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8개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매장을 전부 다 방문해서 확인을 일일이 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까지 저희는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했을 때는 전부 다 파기하고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수사 의뢰를 하고 우리가 진행하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옛날에 어땠는지까지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리고 관련된 자료에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등 자료 사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사진이 증거물로 제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이 직원은 공금횡령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이고, 지금 15,000건의 단말기 편취로 인해 저희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진정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저희에게 이 공금횡령 건에 대해 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직원이 제출한 것은 2014년도 자료부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부당했다면 진작 저희를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 허 옥 부위원장

- 주민등록 등이나 관련된 자료, 제보됐던 내용들은 봤을 것 아닙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봤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거기에 나왔던 주민등록증들은 누구의 주민등록증입니까? 직원들 것입니까? 아니면….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저희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지, 저희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저희가 정확히 현장에 나왔을 때 그것이 민원에 의해 현장점검을 나왔다는 이야기도 실은 그 당시에 못 들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 '주민등록증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사관들께서 오셨을 때는 당시 민원에 대해 이런 일인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리점에서 운영하다 보면 휴일에 아니면 지인 판매들이 많다 보니까 지인들이 개통을 부탁하고 잠깐 자리를 이탈할 때 신분증을 맡길 수 있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다 받지 못하게끔 현재 업무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맡길 수 있지만'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 위반입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그런데 그것은 고객과의 편의를 위해 저희가 고객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고객 동의하에 주민등록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개통할 때 휴일 같은데….

○ 허 육 부위원장

- 개통할 때 복사해서 삭제하는 것과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폐기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영환 법률자문관

-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한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효성 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곽영환 법률자문관

- 지금 한성텔레콤 측의 변소 요지는 방통위 현장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한 자료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보관·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떤 의도를 가진 민원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행정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증거 능력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에 근거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로 제출한 자료나 우리가 자체 확보한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법 위반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지만 사무처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디테일한 법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법관이 보고 자유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술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지 회사 차원에서 보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지요.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의 행위를 이유로 법인이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비판이 있지만 이것은 경영주체나 기업의 감독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민원인은 한성텔레콤의 종업원이었고,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한성텔레콤사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확보한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를 한성텔레콤의 행위로 봐서 과태료 처분한 사무처 의견이 법리상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조사 결과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발견 됐다는데 어떤 경위로 발견된 것입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그것은 민원인이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 꽈영환 법률자문관

-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는 아니고요?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민원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법률자문관의 지적을 참고하시면서 질문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권윤경 팀장님, 자료에는 팀장님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지금 진정을 넣은 직원 매장이나 저희 소매 매장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8개 매장을 다 관리하는 위치에 있고요? 관리하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시지요?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저희 8개 매장뿐만 아니라 판매점 60여곳의 고객들 불만이나 지금처럼 고객 피해사실이 있을 때에는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제가 업무처리를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법률자문관님의 의견을 들으셨을 것이고,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재의 건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탈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이렇게 제보해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직원이 재직 당시에 했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있는 분들의 억울함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면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특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엄격히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사업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대단히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증 사본을 찍어서 보관한다거나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캐너로 신분증을 본사로 바로 보내고 사본은 보관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까지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부 판매원이 권윤경 팀장님에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점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사에서 개통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지 않기 위해 스캐너로 등록하고 파쇄하는데 대리점 차원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꼭 이렇게 초기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제출된 자료는 저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저희 핸드폰이나 직원들 것을 보셔도 그런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것을 보관하고 고객의 정보를 침해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오셨을 때 저희 고객불만 접수 건을 전부 다 조사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피해사실이 있고 고객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용하게 썼다면 피해사실에 대해 접수가 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2010년 4월에 문을 연 이래 한 번도 접수 건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한성텔레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결례를 보면 이용자의 민원, 개통된 민원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사는 개인정보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 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 본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

다면 본사와 협조해서 이용자 개개인의 민원에 대해 응대를 하면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혹시 이통사 본사의 협조가 원활치 않는다면 소위 이야기하는 우월적 입장에서 ‘당신들이 일선에서 해결해야지 왜 이것을 본사까지 가져오느냐?’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위원님 말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 지 몇 달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신분증 사본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굳이 보관하지 않고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 이후로 저희 직영점뿐만 아니라 판매점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SK텔레콤에서 대리점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단속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엄중한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판매점들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단시간 내에 또 많은 정보들을, 또 많이 개통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금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판매점에도 나가서 저희가 보는 즉시 바로바로 폐기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판매원들 설득도하면서 개인정보 강화된 것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저희도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진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지만 앞으로 개선을 열심히 하고 보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러 온 것이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장 내 주민등록증을 일시적이거나마 아까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 제보된 사진처럼 이렇게 다양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그것은 저도 처음 본 내용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런 것들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간 것이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는 지금 현 상태는 자료가 없지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앞뒤를 맞춰서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그러나 제보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사진을 임의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그 사진은 저도 방금 처음 봤는데 저도 솔직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저희가 하루에 개통되는 건수가 테크노마트나 집단 상가가 있을 때는 하루에 수십 개씩 개통되지만 SKT 단독 매장에서는 하루에 5개 이상 개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단통법이 강화가 되면서 예전에 일시적으로라도 몰아서 개통하는 건수가 많아졌지만 최근에는 기기변경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지인 판매 위주로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량의 신분증을 보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악의적으로 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다량의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지금 그 사진이 어떻게 제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사에서도 그랬고, 저희 전주 팀에서도 한 번씩 개인정보를 조사하러 옵니다.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리면 제가 8개 매장을 전부 다 순회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혹시나 하나라도 있을까 봐 메모지 하나까지 다 보는데 제가 그런 신분증을 정말 처음 봅니다. 제가 먼저 1차 검수하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나오는 팀이나 팀에서 나오는 개인정보팀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은 처음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만일 저 사진이 회사에서 모은 것이 아니고 적당히 모은 것을 이렇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회사에서는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검수를 갔을 때도 저런 증거가 있었다면 저도 시정 조치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메모지 1장 아니면 A4에 섞여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까지 검수를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저런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실무진에서 조사한 다른 사항은 그런 대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의 사진은 틀림없이 민원인이 제기한 사진일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점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러면 이 사진을 접수만 한 것이지, 언제 찍은 것인지 어느 매장인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찍은 시점은 저희에게 접수된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 사진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 중 한 종류였고, 기타 다른 자료를 제시한 것 중에는 판매일보의 경우 2017년 자료도 있었고 그리고 SNS를 통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경우도 2017년의 경우에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경우도 있었고, 이 주민등록증 사진의 경우에는 하나의 예시로 보고서 저희가 굳이 날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다른 자료는 확인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으로만 가지고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래서 이번 안건의 조사결과에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건은 별개로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두 분 진술을 들어보면 신고인이 해고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보한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해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고가 됐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간 것입니까? 공금횡령으로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이 사건을 저희가 인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 옆에 있는 권윤경 팀장이 파악을 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고를 받고 민원인과 저희 직원과 단독면담을 한 것이 올해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에 본인에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차 면담은 17일경에

해서 그동안 향후 진행과정을 보니까 거의 2년에 걸쳐 금액은 3억 6,000만원 정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3월 17일 면담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를 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했을 때 사유는 뭐냐 하면 그 직원이 일반 매니저 밑에 있는 하위직이 아니고 그 매장을 총괄하고 있는 점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도덕적으로 또 그 점장의 위치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을 맡길 수 없어서 구두로 해고를 했고 나중에 정식으로 문서로 해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부당함을 느껴서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그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기 위해 저희가 방통위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거기까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에 내사를 다 끝내서 5월경에 접수를 해서 지난 월요일에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직원이 대리점에 입금을 시키지 않고 계속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적발되어서 3억 6,000만원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서 해고하게 됐다, 그래서 3월 말에 그 직원이 나가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양심을 품고 제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 신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 저희들에게 카톡도 들어와 있습니다. 카톡으로 업무지시한 것, 대리점에서 일반 판매점의 해당 점포에 카톡으로 보낸 내용도 보면 주민등록증이 사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불법인 것 아시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등록증을 무더기로 가지고 있는 사진을 또 찍어서 제보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들조차도 어쨌든 그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대리점과 본사와 업무로 계속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그것을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법행위가 발각된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입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제보자가 자기가 공금횡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 발각이 되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치밀하게 2014년부터 쭉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언제 입사하였습니까? 점장된 것이 언제입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점장이 된 것은 2013년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전에 직원으로도 쭉 근무했었지요?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제 밑에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뭔가 수상해서 내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은데 횡령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방통위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불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주고받고 내용을 보면 또 판매일보를 보면 주민등록증까지도 다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진이 찍혀서 판매일보가 제보되었습니다. 그것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개인정보 미파기 건수도 보면 42,000건으로 파악됩니다. 한성텔레콤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바로 파기했다는 것입니까? 규정에 따라 다 파기했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개인정보법이 현장에서 느끼는 큰 불법적인 것이 최근에 더 부각이 많이 되어서 현재는 일체 보관하지 않고 있고, 예전에 했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현장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단언컨대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조사관 말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판매일보를 제보한 것이 2017년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자료가 개인 PC에 그 신고인이 몰래 저장하고 지우지 않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왜냐하면 2017년도면 아마 직원들이 개인PC가 매장별로 현재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전산 PC 내에서는 일체 다른 카카오톡도 전혀 할 수 없어서 아마 매장별로 정리는 엑셀파일로 필요한 것들은 하게끔 1대씩 개인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회사 것 PC를 가지고 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즉각즉각 파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점검을 나오시거나 SK텔레콤에서 점검을 나올 때 개인PC가 있으면 1차적으로 검수대상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열었던 이메일이나 작성된 엑셀파일을 먼저 선행해서 검출해서 파기하고 제재조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좋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그것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파기해야 하는 것이고, 42,000건이나 미파기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님, 42,000건 미파기라고 하는 것이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42,000건 추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사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자꾸 억울하다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책임을 엄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해 그렇게 앙심을 품었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또 형사고발하셨지 않습니까?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지켜보시고, 일단 그 직원이 재직 중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 간 오고간 여러 가지 카톡이나 SNS상 그런 불법행위를 주민등록증이 왔다 갔다 했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매출액이 3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직원이 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예. 그 뒤로도 퇴사한 직원들이 나오고 그 뒤로 매장도 폐쇄가 한두 군데 된 상태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러 가지 어렵지만 반드시 개인정보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엄중하게 하시고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죄송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직원의 비리 인지 시점이 언제입니까?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금년 1월 27일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그 이후에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군요?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 이전에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비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회사에 불리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권윤경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팀장

- 그렇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나 아니면 퇴사한 직원들에게 저희가 이 자료가 방통위에 접수가 될 것이라는 것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빼내 달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나머지 직원들도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있었다면 같이 제출했을 텐데 이 진정인만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파일을 제보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을 잘 관리 못한 것도 저희 잘못이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까 법률자문관님 지적대로 회사의 행위는 직원들의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만이 특별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진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 박철호 유한회사 한성텔레콤 이사

-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더욱더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9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정말 열심히 해 왔던 것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군산 경제가 많이 무너지면서 8개였던 매장을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올 다음 달까지 한두 개 매장을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력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통신 쪽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존폐위기까지 놓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 주신다면 어렵지만 열심히 또 남은 직원들 추슬러서 더욱 더 군산 경제에 이바지하는 대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한회사 한성텔레콤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안건 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시정조치(안)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5쪽 시정조치(안)입니다. 검단정보통신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① 위반행위 즉시 중지, ②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③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입니다. 그리고 검단정보통신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그리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브로씨앤씨, 큰나래, 한성텔레콤 등 3개사의 경우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중 및 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브로씨앤씨 등 3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검단정보통신, 글로벌네트웍스, 대박통신, 유진아이티, 한성텔레콤 등 5개사의 경우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사항입니다.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유진아이티와 글로벌네트웍스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검단정보통신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유진아이티와 글로벌네트웍스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7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과태료 산출 내역(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사업자 총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별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검토결과, 검단정보통신 등 9개사는 조사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별첨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유건수가 5만건 이하이고,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회 회의 결정의 전례를 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작년에 48차, 그리고 금년 제9차, 금년 제47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되고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제48차 회의에서는 10만건 이상 파기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이첩하였습니다. 사업자별 미파기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 후 '19년도 상반기 중 이행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오늘 위반한 사업자 10개사 위반행위를 보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PC나 USB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
해야 하는 사항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개 위반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4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판매점과 대리점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지만 이통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대리점마저도 이렇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별초조항에 개인정보가 미파기되면 그리고 5만건 이하면 시정조치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다. 결국은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명령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지난번 작년 12월 회의에서 10만건 이상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는데 개인
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 아직 수사가 진행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하는데 미파기에 대해서는, 다만 망법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인데 오히려 더 처벌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래서 지적한 그 문제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나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여
별 실효성이 없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방법 등 별도의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말단의 위반사업자인 대리점이나 판매
점에 대한 조사나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위탁자인 이동통신사 3사가 소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강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위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신년 업무계획
때 이통사 본사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계획을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개인정보 미파기는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
해서 파기하도록 정해져 있고, 법령상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본인이 1년, 2년 보관기간을
동의한 사항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파기 건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안에 비해서 수사를 바로 못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파기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입법정책사항이긴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과태료 부과 수준도 3,000만원 이하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더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 벌을 강화하는 측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진술인 진술을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 고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보된 문건이 판매일보와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술인 한성텔레콤에 이것을 제시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나 하는 부분을 밝혀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정하고 있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어느 일정한 시점을 계속 1년이건 2년이건 보관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대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위반사항이 중대하면 이것은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제3의 피해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례대로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우리가 조사할 여력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만 받고 이것으로 해서 미파기 건수를 추출해낼 것이 아니라 한성텔레콤에 확인·대조는 해 보지 않았지요? 이것이 언제 자료인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 선주영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저희가 민원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시점은 금년 5월이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다면 '14년도부터 최근까지 판매일보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목적이 이미 그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에게 제시된 자료를 보면 수년전 자료부터 최근 '17년 자료까지 같이 다 있습니다. 아까 의견 진술인이 4만 몇 천명 정도 가입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 가입자 대부분의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진술인 이야기처럼 한성텔레콤에 있는 점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PC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용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피심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한성텔레콤으로 하여금 우리 조치에 승복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보관은 이미

2012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됐는데 주민등록번호 보관은 판매일보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있어서 이것은 명백하게 위반에 해당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미파기 건도 판매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 달성을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이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2, 3년 전까지 보관하면서 하는 것은 한성텔레콤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합니다. 한성텔레콤에서는 분명히 자기 점포에 있는 또 대리점에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다 폐기가 됐는데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한성텔레콤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한성텔레콤의 직원이었던 매장 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수집·보관 자체를 금하고 있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리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위법에 해당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매장에서 이것을 수집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대리점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법률자문관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법률자문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은 당연히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법인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스캐너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피심인들은 억울할 수 있는데 분명히 판매원과 또 대리점, 본사와 가입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시라도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서 수집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고지 및 결제 절차, 미성년자 보호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8년 3월에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기협 등 관련 협회와 그다음에 아프리카TV나 구글 등 관련 사업자 총 14개 기관이 참석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자율규제 및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료아이템 1일 결제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를 하기로 하고 아프리카TV가 6월부터 하고 기타 사업자들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결제한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리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7월에서 8월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을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렴한 바 있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대가를 결제하기 이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 한도와 관련해서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제 오류 방지 및

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가 단계별로 결제되고 있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완료 이전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동의나 통보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자동결제의 해지방법을 가입 방법보다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결제내역 확인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후원아이템의 소멸과 환불에 관련된 내용도 소멸여부나 시기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환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 결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등으로 결제동의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가이드라인을 접수해 주시면 2019년 1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소액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편법이 또 새로 생기는데 이것을 하면 그 편법까지 방지가 됩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지난번 국감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이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부분과 별도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조블페이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결제가 100만원 제한한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도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한도를 포함해서 1일 100만원 이내로 제한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실효적인 조처가 되어야 시장에서 우리의 정책 목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자칫 놓치면 각종 편법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앞으로 감안해서 보완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언론진흥재단 10대 청소년 미디어이용 조사를 보면 2016년에 청소년의 25%가 인터넷개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또 구글코리아에 의하면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국내 채널이 작년에 1,275개로 2015년에 비하면 2년 사이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절한 규제체계가 없어서 고심을 해 왔는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인 가이드라인을 보고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에 유료후원아이템외에는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원에 대해 자율적이나마 규제를 하면 개인방송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인터넷방송의 BJ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머니 취득입니다. 그래서 하루 6,000만원 별풍선 취득이라는 비정상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잘 된 것 같지만 조금 전 표철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제대로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프리카TV에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상품권, 도서상품권은 100만원의 결제한도가 아니라 상품권별로 월 300만원까지 별도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유튜브는 참여하고 있지만 트위치 같은 해외사업자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지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인터넷개인방송의 해외플랫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이드라인 제5조(사업자 의무)제3항을 보면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1차 클린 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해서 유료아이템 1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자율규제한 것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대책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어찌 보면 그 가이드라인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조블페이 등 온라인상품권을 통해서 우회 편법적으로 자율규제 한도를 넘어서는 결제를 하는 것이 문제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금년 초에 마련했던 인터넷방송들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제3항을 보면 후단에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자로부터 충전한 유료후원아이템으로만 선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아프리카TV 대표는 “조블페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 이후에,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다른 오픈마켓에서 결제한 것도 한도로 다 통합해서 합산하는 것은 사업자가 시스템을 그렇게 구성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하겠으며, 조블페이 같은 경우 예전에 한도 없이 하던 부분은 개선이 되어서 조블페이 내에 대해서도 한도는 별도로 설정한 상태입니다만 조블페이나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그다음에 아프리카TV 내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합산해서 1일 한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구성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지켜지더라도 BJ와 이용자 개인 간 거래관계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음성적인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행자가 핸드폰번호를 알려준다거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줘서 이용자 개인과 BJ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나 사업자가 단속을 하더라도 BJ나 이용자들 간 개인적인 관계까지 완벽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BJ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있어서 자율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가이드라인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진즉부터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만 특히 청소년들이 정말 하루 밤새 자정을 전후해서 6,000만원이라는 별풍선을 단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성패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1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충전하고 선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제수단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여러 가지 모든 결제수단을 다 통합해서 1일 100만원 하는 것을 지켜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온갖 편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음성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담아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법령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수단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 결제수단마다 100만원 이렇게 따지면 수백만 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우선은 결제한도는 사업자들과 자율적으로 하는 규제방안으로 나온 사항이고, 송희경 위원께서 별도로 발의해서 경제적 이익한도를 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다만, 게임에서 상한 규제 이런 것들이 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콘텐츠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진흥 측면, 또 부작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사업자들과 자율적으로 지켜지도록 추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1. 의결사항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67-567)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와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해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7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정책과제와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방송평가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규칙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여일간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접수는 총 19건으로 관계부처 3건, 사업자가 16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규개위의 비규제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예고에는 배점, 즉 기본점수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을 하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해당 항목의 위반 건수를 직접 감점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하한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 총점의 1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의견으로는

기본점수 부여가 필요하고, 해당 항목의 최대 감점폭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기본점수 부여 폐지는 해당 기본점수에 의한 전체 평가점수의 왜곡 방지를 위한 평가규칙 개정의 주요사항으로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고, 종편PP의 경우에 최대감점 폭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 하한선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군(群)별 총점과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총점 및 영역별 배점 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예고에는 보도PP의 일부 항목에 대한 배점 확대, 그리고 홈쇼핑PP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의 배점 확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SO의 경우에 내용과 편성영역의 점수 축소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의견으로 연합뉴스TV에서는 평가항목의 수가 감소되었음에도 기존 총점의 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도PP에 대한 일부 항목 배점 확대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홈쇼핑PP가 지상파와 비교할 때 일부 항목 배점의 확대는 과도하다는 의견, 그리고 SO의 내용·편성 영역 점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서는 보도PP 매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유지하였으며,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재설정에 따른 것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두 번째로 항목 간 배점은 동일사업자군의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와 항목 수를 고려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군(群)과 비중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SO의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영역 점수가 확대된 것으로 내용·편성 영역의 확대는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부분의 사업자들 의견이 자신의 자사의 유불리에 따른 배점 조정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관련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질 평가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 평가의 배점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상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행정예고에는 대부분 사업자군의 해당 항목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라디오 매체 특성상 수상실적 건수가 적어서 이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위성의 경우에도 수상실적 평가를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오히려 JTBC는 배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면에 또 다른 종편은 배점이 축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라디오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항목의 배점을 일부 10점 정도 축소하되 총점의 배점을 고려해서 자체심의 항목을 10점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채널을 운영하는 위성의 경우에도 평가 제외보다는 SO의 배점과 사업자 의견을 감안해서 항목의 배점을 5점 축소하되, 역시 시청자 의견 반영 항목에 5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편PP의 수상실적 배점 확대는 우선순위 재설정에 따른 것이므로 역시 수용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한 결정 평가인데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예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감점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가 제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현행 법원의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판결을 감점대상으로 하고 있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행정예고에는 종편PP에 대해서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낮으므로 평가항목의 배점 축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평가점수의 변별력이 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축소 의견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표시를 보시면 '16년도에 JTBC만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지만 '17년도 방평위 1차 심의결과를 보면 다른 사업자들도 대부분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예고에는 종편PP의 현행 배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자 제출의견에는 SO의 경우에도 공익광고에 대한 편성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또 공익광고 편성 활성화를 위해 평가배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서는 전체 항목의 배점 조정을 고려할 경우, 이번 규칙에 SO에 대해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차기 규칙 개정 시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방안을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점에 대한 추가 확대도 현재 우선순위 설정 등을 고려하면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예고에서는 사업자군 항목 모두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의견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은 사업자군의 경우에는 배점 확대가 적절하지 않고, 일부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투자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재설정에 따른 것이고, 평가 산정 기준은 절대금액이 아닌 투자비율에 대한 비율평가이고, 이러한 콘텐츠 투자유도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자 의견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관련해서는 현행 10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보도PP의 경우 10점 배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사업자군에 비해 낮은 배점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평가 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 예고에는 기존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을 9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고,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각 사업자 그리고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4개 그룹군으로 평가 대상군(群)을 나누었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8쪽이 되겠습니다. 편성실적보다는 재난 발생 시 대처의 적절성, 그리고 절대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이미 재난방송 실시율은 세부적으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역시 차이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평가체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의견 수용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는 일부 보도 프로그램 분야 편성비율을 축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 변경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기존 오락분야 최대 편성비율을 감안해서 관련한 부분을 축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항목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주제작 시장과 관련한 상생협력 강화 평가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에는 안전 강화와 외주사 간 상생 강화를 위해 관련한 '보험가입 여부'와 '상생협의회체 운영' 등을 기준 평가항목에 통합·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출의견으로서는 오히려 가입확인서 요청 시 외주사의 불만제기가 있을 수 있고, 상생협의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함께 방송협회에서는 자율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한 사항이 평가가 필요한 항목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상파의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17년 5월에 5% 이상 본방송 개시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제출의견으로서는 UHD 편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인정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EBS는 현재 본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서는 UHD 프로그램 편성 유예는 적절치 않고 역시 세부기준 작성 시 사업자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방송 개시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보도PP에 대해 역시 수상실적 평가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역시 보도PP의 채널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관련 보도PP에도 수상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그리고 SO, 위성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평가 신설과 관련해서는 SO, 위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 제출의견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의견이 왔었습니다. SO의 비중에 비해 위성방송의 비중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가이드 채널을 운용하는 위성의 역할을 고려하고, SO와 유사한 매체군임을 고려하여 관련부처 의견을 수용하여, SO와 위성의 항목 배점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위성의 경우 장애인 시청지원 항목 배점을 대신 5점 확대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홈쇼핑PP,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평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번 9월 17일에 방심위에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PP의 감점을 가중하는 혀위·과장 범위를 신설·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혀위·과장에 대한 범위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참고표시처럼 제5조(일반원칙), 제15조, 제23조의 3개항에 대해서는 3회차부터 2배 감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 때에는 3회차부터 1.5배 감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서 감점·가중 대상이 동일유형으로 과도하게 확대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차기 규칙 개정 시 평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SO, 위성, 홈쇼핑PP에 대한 운영영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운영영역 필요를 제외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현재 방송법에 관련한 내용, 편성,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시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5>번 현행·행정예고안·수정안 비교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항에 대해서 반영하였고, <6>번 차기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 개정입니다. 차기 방송평가규칙에 2가지 사항에 대해 추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관련한 외주시장 상생협력과 UHD 대해서는 규칙 개정은 아니지만 세부평가기준, 저희가 마련할 때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규칙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세부기준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를 부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 퇴장)

(이효성 위원장, 혀 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혀 육 부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실무진이 보고를 많이 드렸지만 11쪽 비교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를 했을 때 지상파사들은 다른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종편과 다른 쪽에서 일부 의견개진들이 있었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법령위반에 대한

감점 폭이 총점에서 제한을 10%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종편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였는데 지난번 평가규칙에 따라 채점이 됐을 때 700점 만점에 종편이 법령위반으로 감점된 것이 85점, 그래서 12%가 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감점해 봐야 10%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이 건은 행정예고를 한 이후에 일부 보완한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워크숍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보고를 다 받았으니까 원안대로 동의 합니다.

○ 허욱 부위원장

- 그동안 연구반 운영과 의견수렴, 워크숍, 공개토론회,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 보고된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기준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타

○ 허욱 부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회

○ 허욱 부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6분 폐회 】